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노인복지과-21887
등록일자	2015.9.18.
결재일자	2015.9.21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노인행정팀장	노인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	부구청장 직무대리	
손기림	위성철	홍경일	김효길	전결 09/21 주윤중	
협조자					

“ 민간투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”



행복요양병원 '2014 · 2015년 BTL 시설운영비' 부과 계획



- **부과근거** :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고문 신청조건 가항 [2011.10]  
 ☞가항. SPC(민간사업시행사)의 시설물 관리·운영에 대한 비용(12억이상/년)을 일체 납부할 수 있는 법인
- **부과금액** : **1,270,863,480원**  
 - 2014년 : 537,411,620원  
 - 2015년 : 733,451,860원(향후, 물가변동분 반영 시 변동 가능)
- **부과납부 및 시기**

횟 수	부과 산정 기간	부과 시기	납부기간	부과대상자
1	2014.4.14. ~ 2014.12.31	9월 중순	2015.10.16 ~ 10.31	의)참여원 의료재단
2	2015.1.1. ~ 2015.12.31	11월 중순	2015.12.16 ~ 12.31	

- **부과 후 조치 사항**  
 - 의)참여원 측의 미납 또는 납부 불응 시 이행소송(운영비 청구의 소) 제기 검토

2015. 9 . 17 .

강 남 구  
(노 인 복 지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 style="color: green;"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강남구립노인전문 병원 운영 관리 위·수탁 공고문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 style="color: green;">추진 경위</b>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추진경위 : 병원 위·수탁 선정 공고조건대로 참여원으로 시설운영비를 부과하고 세입처리 하고자 함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 style="color: green;">예산 사항</b>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거 :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위 수탁 운영 공고조건</li> <li>·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 style="color: green;">수혜자 및 범위</b>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 style="color: green;">분야별 검토사항</b> [계속 : ] [신규 : 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li> </ul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 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)	⑤ 시장조사	-----	( 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<b style="color: green;">타 기관 사 례</b>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함평 공립 요양병원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 style="color: green;">전문가 자 문</b>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문가 : 구 고문변호사 외 5인 자문 완료</li> <li>· 자문결과 : 수탁법인(참여원의료재단) 시설운영비 납부 의무 있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행복요양병원 BTL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2014년 · 2015년 시설운영비를 부과하고자 함.

⇒ 시설운영비 : 병원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대가  
(⇒ 인건비, 유지관리비, 운영설비 대체비, 부대비 및 제경비)

## I 부과근거

### 1 부과근거

- ‘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고문’의 제5항 신청조건 가항  
- SPC(민간사업시행사)의 시설물 관리 · 운영에 대한 비용(12억이상/년)을 일체 납부 할 수 있는 법인

### 2 부과성격

- 의)참여원이 「강남구 어르신행복타운 내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」 공고문의 내용을 수락하고, 신청서(병원 수탁 운영 사업계획서 등)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당사자 합의(계약)에 의한 부과임.
- ※ 납부 불응 시 운영비 청구 민사 소송 제기

## II 추진경위

### □ ‘시설 운영비납부’ 관련 위 · 수탁 기관 추진 현황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  
 \*\*\*\*\*  
 \*\*\*\*\*  
 \*\*\*\*\*  
 \*\*\*\*\*  
 \*\*\*\*\*  
 \*\*\*\*\*  
 \*\*\*\*\*  
 \*\*\*\*\*

### Ⅲ 부과개요

**부과대상자** : 의)참여원 의료재단(행복요양병원 운영 수탁자)

**부 과 액** : **1,270,863,480원**

- 2014년 : 537,411,620원

- 2015년 : 733,451,860원 (물가상승률에 따라 부과 금액 변동 가능)

\*  \*\*\*\*\*

\*\*\*\*\*

연도	소 계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
총 계	3,942	537	733	795	818	844	215
산출액	3,583	488	666	723	744	767	195
** VAT	359	49	67	72	74	77	20

\*\*\*\*\*

**부과 및 납부 방법** : ‘세외수입고지서’ 에 의한 고지 및 은행 납부

-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 고지서 발행

- 당해 연도 세입 처리(세외수입, 기타잡수입)

**납부 시기**

년도	부과 산정 기간	부과시기	납부기간
2014	2014.4.14. ~ 2014.12.31	9월 중순	2015.10.16 ~ 10.31(16일간)
2015	2015.1.1.~ 2015.12.31	11월 중순	2015.12.16 ~ 12.31(16일간)

## 1. 검토배경

\*  \*\*\*\*\*

‘BTL 민간사업자 시설운영비’ 납부 의무에 대하여, 공고문에는 명시되었으나, 협약서 상 명시적으로 표기 되지 않음으로 인해 납부의무에 대해 이의 제기

강 남 구	(의) 참 예 원
✓ 공고문은 협약 내용에 포함 ** → 순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<u>납부 의무 있음</u>	✓ 시설운영비 <u>납부의무 없음</u> (협약서누락) ✓ <u>순이익금 발생 시</u> 지급의무 발생

\*  \*\*\*\*\*

구분	강 남 구	(의) 참 예 원
공고문	- 공고 조건은 위탁 계약에 편입 - 계약의 내용을 구성	- 신청자 재무능력 기준 제 불과 (독립적으로 법적 효력 - 계약 내용 구성하지 않음
협약서	- 계약의 필수 요소 아님 · 수탁자로 지정됨으로써 운영에 대한 위탁 계약 성립 완료 - 성립된 계약의 후속 조치에 불과	- 계약의 필수 요소 - 협약서만이 법적 구속력 지
운영비 성격	- 병원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 - 운영비 향유의 실질 주체 : 참여원	- 강남구와 BTL 민간사업자 약에 따른 것 (참여원과 무관
결 론	☞ <u>공고문은 협약서의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 계약에 포함되므로 참여원은 시설운영비 납부 의무 있음.</u> ☞ <u>운영비 납부에 대한 약정 체결은 수탁자로 선정 시 성립</u>	☞ <u>공고문은 계약내용에 포 함되지 않으며, 시설운영비는 강 남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참여원은 지급 의무 없음</u> ☞ <u>순이익금 발생 시 지급 의무</u>

## 2. 검토결과

- 변호사 및 회계사 자문 결과 : 의)참여원에 시설 운영비 부담 의무 있음

## V 향 후 계 획

### 행복요양병원 ‘시설 운영비 부과’ 조치

- 부과일시 : 2015. 9.23(2014년도 분), 11월 중순(2015년도 분)
- 부과방법 : 공문 및 세외수입 고지서

### 의)참여원 의료재단 미납 또는 납부 불응 시 조치사항

- 2014년도 분 납기일 경과 즉시 이행 소송 제기(운영비 청구의 소) 검토

- ※ 별첨 1. 부과금액 세부 산출 내역
- 2. 변호사별 자문 내역 1부(위·수탁기관 포함)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**【별첨 2】**

연 도	2014			2015				
	분 기	2	3	4	1	2	3	4
부과총액 (2014년+2015년)	<b>1,270,863,480</b>							
①연도별총계	<b>537,411,620</b>			<b>733,451,860</b>				
②소계(③+④)	178,861,342	179,041,830	179,508,450	178,576,090	179,508,450	180,254,360	195,112,960	
③운영비	162,601,220	162,765,300	163,189,500	162,341,900	163,189,500	163,867,600	177,375,419	
④부가가치세	16,260,122	16,276,530	16,318,950	16,234,190	16,318,950	16,386,760	17,737,541	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

【별첨 2】

법무법인(변호사 名)	변 호 사 의 건	결 과
(이성섭) 구고문 - 2014.12.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공고조건, 사업계획서, 공문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운영비 납부 의무 있음</li> <li>운영비는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원이 부담할 고정비용으로 해석</li> </ul>	납부 의무 있음
(세광:이중광) 구고문 - 2014.12.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공고조건, 사업계획서, 공문」 등을 고려 시 참여원에 운영비 납부 의무 있으며, 참여원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</li> </ul>	납부 의무 있음
(김종환) 외부 - 2015. 3.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영비 납부에 대한 약정 체결 : 수탁자 선정 시 성립</li> <li>계약서 작성이 약정의 효력 발생 요건 아님 - 낙성계약)이 원칙, 계약서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도 운영비 납부 약정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음</li> <li>협약서 제6조 제5항2), 조례 제5조 제4항3)에 근거 하여 운영비 납부 요구 가능</li> </ul>	납부 의무 있음
(우일:강소진) 외부 - 2015. 3.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고조건은 협약서 상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 계약에 편입(시설운영비 : 계약상 기본의무로 편입)</li> </ul>	납부 의무 있음
(우일:강소진) 외부 - 2015. 4. 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병원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제 운영 하는 참여원이 부담 하는 것은 당연</li> <li>참여원은 시설운영비 납부에 대해 협약서 체결 당시, 2014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까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나, 현재 협약서 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채무를 면하고자 함</li> </ul>	납부 의무 있음
(이성섭) 구고문 - 2015. 4. 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원은 계약 당시 공고조건을 알고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공고문은 계약내용에 포함됨</li> <li>사업계획서(수탁자선정시·2014년)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이익금에서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문구는 없음.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은 부당</li> </ul>	납부 의무 있음

1) 낙성계약 :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

2) 협약서 제6조 제5항 : 관계 법령과 조례·규칙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“값”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3) 조례 제5조 제4항 : 병원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,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

**【별첨 2】**

\*\*\*\*\*

법무법인(변호사 名)	답변	결과
(윤종우) 재단고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고조건은 재무능력에 대한 기준에 불과, 공고 조건이 협약내용으로 편입된 바 없음</li> <li>• 공고문은 법적 구속력 없음</li> <li>• <b>협약서 제1조4)에 의거 본 협약은 참여원이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의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참여원은 순이익금에서 시설운영비 납부할 것을 제안 → 순이익금 발생 시 지급의무 발생</li> </ul> </li> </ul>	납부 의무 없음
법무법인 세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운영비는 민간사업시행자와 약정에 따라 강남구가 지급 하여야 할 비용으로 참여원과 관련 없음</li> <li>• 참여원은 별도로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출하므로 강남구 주장은 부당</li> </ul>	납부 의무 없음
법무법인 예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고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 한다 볼 수 없음</li> <li>• 시설운영비는 강남구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참여원은 지급의무 없음</li> </ul>	납부 의무 없음

수탁자가 부담한다.

4)협약서 제1조 : 이 협약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“을”이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체 선정 시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, 개원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